

2023년 8월 16일

Preview

안정적인 기업 운영을 위해서는 법적 기준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AI나 암호화폐 등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계획하는 기업은
업무와 관련한 최근 이슈와 판례 등을 부지런히 파악하여
법률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성을 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본 뉴스레터에서는 리플(XRP) 증권성 판단 판결에 대한 법률해석과
생성AI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이슈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리걸 이슈 Legal Issues

‘리플(XRP)이 증권이고 또는 증권이 아닌 이유’

‘생성AI를 업무에 활용하면서 개인정보를 입력하였다면 문제없을까?’

민후 소식 Minwho News

‘코인레일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사건 피해자들 대리한 수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사건서 승소’

‘세무법인 비즈니스모델의 세무사법위반 여부 등 적법성 검토 법률자문’

리걸이슈

리플(XRP)이 증권이고 또는 증권이 아닌 이유

2020년 12월 22일 제기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리플랩스에 대한 증권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한 뉴욕지방법원 1심 판결이 지난 주 나왔다. 2013년 이래 리플랩스는 리플(XRP)을 146억개, 13억 8000만 달러(한화 약 1조 7000억원)어치를 발행·판매했는데, 이 과정에서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 리플에 대한 등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이 제기됐고, 3여년 만에 1심 판결이 나온 것이다.

리플에 대한 판매는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크게 분류하면 7억 2000만 달러의 리플은 기관투자자들에게 문서계약을 통해 판매되기도 했고, 7억 5000만 달러의 리플은 거래소에서 프로그램이나 알고리즘에 의해 판매되기도 했다. 뉴욕지방법원은 이들을 달리 판단하였는데, 기관투자자들에게 판매된 리플은 **하위 테스트(Howey test)**에 따른 증권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거래소에서 판매된 리플은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김경환 대표 변호사
T. 02-532-3425
E. oalmephaga@minwho.kr

하위 테스트란, (1) 공동의 사업에 대한 (2) 돈의 투자가 있고, (3) 타인의 노력에 의한 이익 기대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 증권거래법상의 증권에 해당한다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75년전 이론이다. 리플랩스는 하위 테스트가 아닌 필수요소 테스트(essential ingredients test)을 주장했는데, 필수요소 테스트란 투자계약증권에는 투자자와 발행인 사이의 계약의 존재, 판매 이후 발행인의 특정 행동을 취할 의무의 존재, 이익을 분배받을 투자자의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이론인 데, 뉴욕지방법원은 하위테스트 외에 추가적인 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연방대법원에 의하여 인정된 게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한편, 뉴욕지방법원은 하위 테스트를 상세하게 적용하였는데, 기관투자자들에 대한 판매의 경우, (1) 기관투자자들이 투자한 자산은 집합되어 있는 바 사업의 성공 역시 마찬가지로라는 점에서 '공동의 사업'으로 볼 수 있고, (2) 기관투자자들은 법정화폐 등으로 구매하였기에 '돈의 투자'도 있었으며, (3) 모든 기관투자자들은 같은 형태의 리플을 받았기 때문에 각 기관투자자들의 이익은 리플과 운명을 같이한다는 점에서 타인의 노력에 의한 이익 기대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기관투자자들은 소비용도로 리플을 구매한 게 아니라 투자용도로 구매하고, 일부 계약에서는 락업 조항이나 재판매 금지 조항이 있었다는 점은 이러한 점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았다.

반면, 뉴욕지방법원은 일반투자자들이 관여된 프로그램 또는 알고리즘 판매에 대해서는 달리 보았는데, 투자용으로 리플을 구매하였다는 SEC의 주장에 대해 하위 테스트 중 (3)의 요건이 결여돼 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일반투자자들은 판매자를 알 수 없는 형태의 거래를 하며 투자 용도로 구매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투자자들은 이익을 기대하면서 리플을 구매하긴 하나 그게 타인(리플랩스)의 노력에 따른 기대로부터 파생되지 않으며, 일부 일반투자자들은 리플랩스의 노력에 따른 이익을 기대하긴 하지만 리플랩스는 구매자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약속에 따른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기관투자자와 일반투자자는 (3) 요건에서 구별된다고 판단했다.

우리나라에서도 테라, 위믹스 등에 대한 증권성 논의가 있고, 실제로 기소된 사례가 있다. 뉴욕지방법원원 판결은 현재 1심 단계로서 향후 항소도 예상되는 등 법적 논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증권성에 대한 미국 정부나 한국 정부의 강공이 한풀 꺾이는 계기로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리걸이슈

생성AI를 업무에 활용하면서 개인정보를 입력하였다면 문제없을까?

막상 써보니 생각보다 더 똑똑한 것 같은 chatGPT. 제2의 신입사원, 비서라고 불리는 chatGPT 등 생성AI를 업무에 활용하는 회사가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생성AI를 업무에 활용하다보면 부득이 개인정보를 입력해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생성AI를 업무에 활용하면서 개인정보를 입력하였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일까. 이하에서는 생성AI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한 경우 주의할 점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로 아래의 설명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생성AI 공개버전임을 전제로 하였다



양진영 파트너 변호사
T. 02-538-3424
E. yangjy@minwho.kr

먼저, 생성AI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개인정보의 유출로는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의 유출이란,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으로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나, 또는 ▲기타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전달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개인정보보호지침 제51조). 대법원 역시 개인정보의 유출이란, 개인정보가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통제권을 벗어나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다24555·2456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유출은 해당 개인정보가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 범위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통제권을 벗어나야 한다. 그런데 회사가 생성AI를 업무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한 것은 개인정보처리자인 회사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이므로, 개인정보 유출로는 보기 어렵다.

만약 회사가 생성AI에 개인정보를 입력한 이후 생성AI 운영사의 서버관리상의 과실로 유출되었거나, 알고리즘 등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제3자에게 유출되었다면, 이때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므로 개인정보 유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chatGPT의 운영사인 openAI는 사용자들에게 가급적 chatGPT에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을 것을 경고하고 있으며, 'Privacy policy'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적, 관리적, 조직적 조치를 하고 있지만 인터넷이나 이메일 전송이 완전히 안전하지 않고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다. 생성AI의 공개버전의 경우 입력되는 내용이 운영사 서버에 일정기간 저장되며, 차후 학습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다.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동안 제3자에의 노출의 위험성이 있을 수 있으며, 학습데이터로 활용되는 과정에서도 제3자에게 노출되는 위험이 있을 수 있어, 개인정보의 입력은 가급적 하지 않아야 한다.

위와 같이 생성AI에의 개인정보 입력이 개인정보 유출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회사가 개인정보를 생성AI에 입력하면 개인정보의 이전이 일어나는데, 이때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개인정보를 제공한자와 제공받은자 간에 개인정보의 이전에 관한 의사 합의가 있다면 제공받은 목적 범위에서만 사용할 의무, 제3자 제공 시 보유기간의 설정 및 준수 등 여러 가지 법적 제한과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제3자 계약서 등 관련 서류에 반영된다. 양자간의 의사합치가 있어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로서의 의무 준수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 회사는 생성AI에 개인정보를 일방적으로 입력하는 것으로, 회사와 생성AI 운영사가 구체적으로 개인정보의 취급과 이전에 관하여 협의한 것이 아니라, 단지 회사는 생성AI 운영사의 정책에 일방적으로 따를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즉,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기본적인 계약사항의 합의 등 개인정보 이전에 관한 의사합치가 없는 상황이므로 회사로서는 생성AI 운영사에 대하여 제3자로서의 여러 의무를 지우기 어려우며, 생성AI 운영사에게 제3자로서의 법령 준수 등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회사가 개인정보주체로부터 생성AI에의 입력에 대한 동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생성AI 운영사에 대하여 합법적인 제3자로서의 의무준수를 여전히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가급적 애초부터 생성AI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을 것이 권장된다. 최근 국가정보원이 발행한 '챗GPT 생성형AI 활용 보안 가이드라인'에서도 chatGPT와 같은 외부 AI모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여러 보안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개인정보주체의 명확한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로 평가받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금년 9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위반자에게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인정보보호법[시행 2023. 9. 15.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제64조의2 제1항 제1호).

이처럼 회사가 생성AI를 업무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경우, 회사의 통제범위 밖에서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고,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 없는 제3자 제공으로 평가되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생성AI에는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민후 소식

코인레일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사건 피해자들 대리한 수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사건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코인레일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사건의 피해자들을 대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사건에서 수익 원대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아 승소했습니다.

A외25인(원고/의뢰인들)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레일 서비스를 이용하던 이들로, 2018년 6월에 발생한 코인레일 해킹 사건으로 거래소 서비스가 1개월 이상 중단되어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민후는 코인레일 서비스 운영사인 피고에게 이용자의 가상화폐를 무단으로 인출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는 점과 이용자인 원고들이 가상화폐의 인출을 요구할 경우, 즉시 원고들에게 동종·동량의 가상화폐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거래소 서비스 일체를 중단하여 원고들이 가상화폐를 시장가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사실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민후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가 피고에 청구한 손해배상액을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고 이에 불복한 피고는 항소했습니다.

피고는 항소심에 이르러 '에어드랍된 가상화폐의 공제'와 '피고의 출금 당시 시가 공제'도 각 주장했으나, 항소심에서 민후는 에어드랍의 의미와 이행지체의 법리를 설명해 피고 주장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적시하는 한편, 피고에게 '유출된 가상화폐에 대한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 및 '보전된 가상화폐에 관한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청구한 손해배상액 및 지연손해금을 인정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후 소식

세무법인 비즈니스모델의 세무사법위반 여부 등 적법성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세무법인 비즈니스모델의 세무사법위반 여부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세무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마케팅 전략을 활용하여 기장고객을 모집하고 세무 업무를 대리할 세무사를 연결하는 등의 비즈니스모델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더해 A사는 본점을 통해 모집한 기장고객을 분점 등에 소개하는 등이 업무를 예정함에 따라 해당 비즈니스 모델들의 세무사법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사무의 알선행위를 금지하는 변호사법과 세무사법을 비교·대조하여 '알선'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파악함은 물론, A사 비즈니스모델이 세무사법 제2조의2에서 금지하는 세무대리의 소개·알선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민후는 세무사법상 기준과 법원 판례를 근거로 분점에 거래처를 양도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업무 행위가 세무사법위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였고,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업무 방안을 마련, 안내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본 뉴스레터의 내용 또는 기타 법률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민후로 연락주시면 담당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